

## □ 토지 매매계약 경위(명의신탁 여부)

- 1987. 10. 23.경 매도인(조현순), 매수인(임상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49, 1948-1, 1948-3, 1948-4, 양잠단지 12, 1940-1, 1944-5(건물제외)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매매계약서 사본 존재)
- 위 토지 매매자금 임영구(1985.6.24.경 외항선박 퇴직금 11,088,807원과 1987.7.22.경 판결확정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0,243,407원) : 외항선박 퇴직금 영수증과 입금통장 내역서, 교통사고 판결문(부산지법86가합4067 손해배상) 존재
- 위 토지 매매계약 당시 임상구는 확실한 직업도 없었고,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당시 주변에 거주했던 주민들 확인서 확보 가능
- 위 토지 매매계약시 매도인 조현순, 매수인 임상구, 임영구가 계약당시 동석하였고, 임영구가 토지 자금을 현장에서 조현순에게 건넸, 매도인 조현순은 당시 약 50대로 추정되며 현재 90대로 추정되면 위치 확인 안됨(수표로 매수금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나 너무 오래되어 확인 불가)
- 당시 형 임영구는 외항선박 퇴직 후 법인택시 회사에 취직하여 운행 중 심각한 교통사고로 1986. 1. 18.경부터 1986. 5월경까지 부산시 소재 대동병원에서 입원한 사실(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진단서 사본 존재)이 있고, 퇴원 후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위 택시 회사에서 퇴직하고 집에서 통원치료 등 요양하던 중 제주도 거주 중인 동생 임상구의 권유로 위 토지를 위 외항선박 퇴직금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구매하게 됨
- 위 토지는 당시 매도인(조현순)이 이전 소유주인 이해강과 소송진행 중인 상태로 3심까지 진행된 토지로 비교적 다른 토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변호사 비용으로 임영구의 처 백명순이 변호사 비용도 50만원씩 3번에 걸쳐 임상구에게 전달함(계좌내역 확인하지 못함)
- 형 임영구는 부산에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임상구의 명의로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고, 대신 동생도 당시 돈이 없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총 약 8,000평 중 약 2,500평(임상구 주택 주변 및 상대적 위쪽 토지)은 향후 동생 임상구에게 주기로 하고 나머지 5,500평(임상구 주택의 아래쪽인 토지)에 대하여 넘겨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 형 임영구는 위 토지 매수 후 약 3년 뒤 위 토지에서 토종닭을 키워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990년도 임영구의 소유라고 추정되는 토지(현 선흘리 1949-2)에 임상구의 처 배효숙 명의로 된 가건물(토종닭 양육 시설 및 숙식 겸용 축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토종닭 살생을 하지 못하는 개인 성향, 수지타산 문제 등의 이유로 위 토종닭 사업을 약 3년뒤 그만두고 부산으로 돌아옴.
- 위 가건물은 그대로 방치된 채로 유지되었고 2022년경 임상구의 처 배효숙이 본인 명의로 된 가건물 때문에 세금이 나오니 철거를 임영구에게 요구하였고, 임영구는 자신의 비용 992만원을 들여 2022. 3.경 가건물(위 축사)을 철거함(축사철거 견적서 및 입금내역서 존재)
- 형 임영구는 최초 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입시 매입 전체 토지 중 상대적으로 위쪽인 동생 임상구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변 토지 선흘리 1948-1(746㎡), 1948-5(797㎡), 1948-6(888㎡), 1948-7(2,687㎡), 1948-9(998㎡), 1949-3(1,607㎡)을 주기로 하였고, 임영구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인 토지인 선흘리 1948-12(119㎡), 1949(7,302㎡), 1949-2(595㎡), 1949-8(8,265㎡), 1949-9(741㎡), 1949-11(911㎡)를 갖기로 하였음, 그래서 위 가건물(축사)도 임영구의 토지라고 한 선흘리 1949-2

부근에 설치하게 되었음

- 임상구는 2004년, 2005년경 본인의 토지라고 추정되는 토지 선흘리 1948-1, 1948-5, 1948-6, 1948-9, 1949-3에 근저당과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었고, 추후 형 임영구는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던 중 아직 토지에 대하여 최종 명의이전하지 않은 단계에서 임상구가 임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상구에게 형 임영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임상구는 대출 받기 위하여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면서 곧 해지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2013년경이 되어서야 해지한 사실이 있음
- 2006. 9.경 제주시에서 「동부관광도로(대천-선흘) 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계획 알림」 공문으로 수신자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586 고상호 외 144인(임상구 포함)'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

#### (위 공문 및 용지도 보유)

- 이때 제주시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선흘리 1949-4(1,060㎡)로 임영구의 토지 1949-2, 1949, 임상구의 토지 1949-3 사이에 위치로 도로로 임영구의 토지 약 200평이 들어간다고 임상구가 말하면서 당시 임상구는 도로를 8m로 편입하게 하면 향후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수용 도로폭을 8m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임영구는 토지 수용이 많이 들어가 토지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6m 도로로 편입하도록 요구하였고, 최종 6m 도로로 편입하게 되었음.
- 위 토지에 대하여 2007년경 임상구는 제주시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을 받았다고 임영구에게 연락하였고, 임영구는 위 보상금으로 개인택시를 구입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 보상금을 이체할 것을 요청하여 임상구는 2007.03.19.경 금 800만원, 금 750만원을 총 1,550만원을 임영구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함(계좌거래내역 존재)
- 2017. 2. 17.경 형 임영구는 나이가 들어 동생 임상구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 처 백명순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 계획을 세우던 중 이주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 임상구에게 선흘리 1949 토지 중 분할한 토지 선흘리 1949-9와 1949-11(각 911㎡, 741㎡, 총 500평)을 동생 임상구 명의로 먼저 매도할 것을 요구하여 매도 후 매도금(3억 8,500만원)을 확보함
- 임상구는 위 토지 매각한 매도금(3억 8,500만원)을 임상구 명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356-1218-9056-13)로 받아 위 농협은행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형 임영구에게 건네면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소량으로 조금씩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하였음, 임영구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소량씩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부산시 소재 병원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부산으로 이동 중에도 부산시 소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일부 인출하였기에 인출한 계좌거래내역이 남아 있음
- 임영구는 위 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2017경 7월경 임상구와 감정상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임상구는 임영구에게 1억 8,070만원, 백명순에게 3,500만원, 임현경에게 1,500만원 이체하는 등 총 2억 3,070만원을 이체하였고, 추후 2023.경 이 금액이 세무조사 당시 증여금으로 간주 되어 증여세(약 5,900여만원)를 받게 됨
- 위 토지 매매시 매매계약 현장에 임상구 외 임영구 아들이 매매대상 토지 및 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하였고, 상대방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매수인도 같이 참여하였음,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및 매수인도 임상구의 아들이 아닌 조카가 참석하게 되어 다소 의문을 가진 상황이었음.(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통하여 조카가 참석한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는 작성 가능)

- 비슷한 시기인 2017.03.07.경 임상구는 자신의 토지라고 간주된 선흥리 1948-14와 1949-10(각 202㎡, 1186㎡, 총 420평)을 매도하고 매도금(5억 2,50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당시에는 임영구의 아들이 참여하지 않음
- 위 임상구는 위 토지를 매도하고 매도금 중 2017. 04. 21.경 처 배효숙에게 1억 7,500만원, 2017. 04. 12.경 자녀 임한희에게 5,000만원, 임한국에게 5,000만원, 임을원에게 5,000만원을 각 이체 하였음(이체내역 갑제17호증)
- 2017. 5. 23.경 증여계약 형식으로 임영구, 백명순은 선흥리 1948-12(119㎡), 1949(7,302㎡), 1949-8(8,625㎡), 1949-2(595㎡)를 명의이전 받음
- **2021.8.31.경 임상구가 사망하게 되었고**, 임상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임상구의 유족인 2021 ~ 2022.초경 배효숙 외 자녀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었고, 배효숙과 자녀들은 임영구와 백명순에게 사전증여한 토지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약 3,850만원)이 약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임영구와 백명순은 명의이전을 위한 토지 증여세로 약 8,0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상속세까지 추가 부담시키는 건 무리라고 거절한 사실이 있음
- 2023.초순경 임상구의 유족들은 임상구의 재산 10년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임상구가 배효숙 및 그의 자녀들, 임영구, 백명순, 임현경, 임승구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등이 추가 발견되어 상속세가 약 7,300여만원이 추가 고지되었음
- 임영구, 백명순, 임현경에게는 2017. 03. 07.경 임영구가 임상구에게 제주도 전입을 위한 사전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도를 부탁한 토지 선흥리 1949-9와 1949-11(각 911㎡, 741㎡, 총 500평)의 매도금(3억 8,500만원) 중 계좌로 이체받은 총 2억 3,870만원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음
- 임상구의 유족 또한 배효숙, 임한희, 임한국, 임을원에게 이체한 금액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
- 임한희는 세무조사 대상 전체 금액이 크기에 각자 공제 받을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였고, 임영구는 세무조사 대상 총 2억 3,870만원 중 일부라도 줄이고 임한희 측의 상속세 등의 전체 과세표준금액도 줄이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가공의 ‘**금전대차계약 관련 소명 자료**’(갑 제26호증)를 작성하여 임한희에게 건네주게 되었음
- 임영구는 임상구와 사전에 금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에 ‘**금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 증여세와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가공의 소명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음
  - ※ ‘**금전대차계약 관련 소명자료**’를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임상구 유족에게 건네주어 약 5,600여 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세금과표에서 임상구 유족 상속세, 임영구 증여세 등에서 감면 받게 됨
  - ※ ‘**금전대차소비계약 관련 소명자료**’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원고측에서 세금공제자료들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작성한 문서로 원고측에서 이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이 아닌 금전대차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 감면을 위한 자료로 원고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입증할 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한희 측은 상속세 7,300만원 부분에 대하여 임영구와 백명순에 대한 토지 사전증여로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엑셀자료를 주면서 약 44,645,176원을 요구하였음
  - ※ 세무대리인 이명준 회계사를 통하여 위 엑셀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한 바, 임한희 측에서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최초 상속세(약 3,800만원) 신고 후 세무조사 후 발견된 추가 상속세분(약 7,300여만원)으로 임영구와 백명순에게 사전 증여한 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최초 상속세(약 3,800만원) 신고시에 반영되었음
  - ※ 추가 상속세(약 7,300여만원)에는 임영구와 백명순에게 사전증여한 토지 매도금(2억 3,070만원 중 약 5,600만원을 공제한 1억 8,000만원)만 반영되어야 함에도 위 엑셀자료에 임영구와 백명순에게 토지 사전증여분이 잘못 들어가 계산된 계산식이라고 하면서 임한희가 세무대리인을 방문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
  
- 임한희는 백명순에게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세가 많이 나왔으니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백명순은 사전증여로 인한 증여세도 많이 나와 이를 납부하였는데 상속세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국세청에도 문의한 바 상속세는 임상구의 유족들에게 나온 금액으로 임영구와 백명순은 납부할 의무는 없고 도와 줄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라 하여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임한희는 임영구와 백명순의 집으로 찾아와 상속세를 주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무례한 언행을 일삼다, 2023. 8. 20.까지 배효숙의 농협계좌(90105551033084)로 상속세 44,645,176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면서, '형제지간에 그냥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싸우자고 하시네. 연락줘'라고 하였고 입금이 되지 않자 현재 구상금 청구소송 대신 현재의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됨(임한희 입금요구 카톡 사진 자료 존재)
  - ※ 상속세에 대한 증여세 기여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인정되기 어려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의 2, 제13조, 제28조)(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가4 결정)

## □ 단기 소멸 시효 도과 여부

- 사실관계상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유류분반환 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사망(2021. 8. 31.경)한지 2년이 도과되어 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대한 '특별수익'을 들어 민법 제1114조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하려고 함
  - ※ 그러나 임영구와 백명순은 임상구와 형제, 형수관계로 공동상속인 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 제3자에 대한 증여 관련 선의 여부

- 또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법 제1114조 후단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명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를 주장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금전대차계약 관련 소명자료'의 일부 내용(2페이지 상단) '그러던 중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동생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 결혼, 노후 자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고'를 인용하여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이 내용은 통상적으로 임상구, 임영구 외에도 노인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녀결혼, 노후자금 등을 걱정한다는 일반적인 언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마치 임상구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함

※ 앞서 언급했듯이 2017. 05. 23. 부동산을 임영구와 백명순에게 증여를 통한 명의이전하기 전 2017.03.07.경 임상구는 자신의 토지라고 간주된 선흥리 1948-14와 1949-10(각 202㎡, 1186㎡, 총 420평)을 매도하고 매도금(5억 2,500만원)에 매도하였고 임상구는 위 토지를 매도한 금액 중 3억 2,500만원을 2017. 04. 21.경 처 배효숙에게 1억 7,500만원, 2017. 04. 12.경 자녀 임한희에게 5,000만원, 임한국에게 5,000만원, 임을원에게 5,000만원을 각 이체하였음(이체내역 갑 제17호증)

- 소장 기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략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 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임영구와 백명순은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을 명의이전 받기 위하여 증여형식을 빌어 돌려받은 것일 뿐이며, 피상속인 임상구는 은퇴를 하였으나 매월 연금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재산의 증가가 기대되고 또한 명의이전 2개월전 피상속인 명의 토지 420평을 매도하여 5억2,500만원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할 수 없었고, 또한 잔여 토지가 약 2,100여평이 남아 있어 토지를 추가 매도시 토지 가격 상승으로 현금 재산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

※ 피상속인 임상구와 임영구는 형제지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활근거지를 전혀 달리하고 있었으며 약 30년 가까이 떨어져 생활하다가 나이 70세를 넘어 80세를 바라보는 임영구와 백명순에게 피상속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를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이기에 형인 임영구와 형수인 백명순에게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증여형식을 빌어 넘겨준 것임

※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후 6개월 내 최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배효숙 등 유족이 유류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세무조사 후 추가 상속세 부과로 사이가 나빠져 피상속인 사망(2021. 8.31.)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상속세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간주됨

※ 또한 원고는 ‘금전대차계약 소명 자료’가 가공의 자료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양 기재된 진술을 인용하여 소장에 유류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명자료가 가공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1. 금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 2. 원고 측의 상속세, 증여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협조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실제 내용과 다름, 특히 ‘1985년 경 본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약 1.348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교통사고를 당한 시점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이 1986. 1. 18.경이며, 손해배상금을 받은 시점은 부산지법 86가합4067 손해배상

판결문과 같이 1987. 7. 22.확정일 이후에 수령하였음

- 3. 위 소명자료에 첨부된 통장사본은 1985. 6. 24.경 외항선박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등으로 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었음
- 4. 따라서 민법 제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법리로 원고가 제시한 '금전대차계약 소명 자료'는 무효로 그 효력이 없음

#### □ 토지 및 현금 사전증여분이 유류분 초과 되는지 여부

○ 2017. 5.경 토지 사전증여시 거약

- 임상구가 임영구에게 토지 사전증여분 가액 : 2억 5,200만원 가액으로 증여 국세청 신고
- 임상구가 백명순에게 토지 사전증여분 가액 : 2억 3,400만원 가액으로 증여 국세청 신고

○ 2017. 6~8경 토지 매각대금 현금 증여

- 임상구가 임영구에게 현금 사전증여 가액 : 1억 3,800만원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 임상구가 백명순에게 현금 사전증여 가액 : 3,500만원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 임상구가 임현경에게 현금 사전증여 가액 : 1,500만원 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 위 토지 및 현금 사전증여 당시 임상구 추정 재산

- 2017. 3.경 임상구 토지 420평 매도 금액 : 5억 2,500만원 보유
- 위 토지 사전증여 후 남은 토지 약 2,000평 + 주택(원고 제출 자료상 상속당시 시가 3억 추정)

※ 명의신탁이 불인정 된다 하더라도, 토지 및 현금 사전증여분이 임상구의 남은 재산의 유류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